NEWS RELEASE

SBI Business Solutions

각위

2022년 2월 1일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전자보존 2년 유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52%의 경리담당자가「1년내 대응」응답
한편, 약 3명 중 1명은 유예조치가 나온 것을「모름」이라 응답하는 문제점도
~SBI비즈니스솔루션즈가 전자장부보존법 유예조치 관련 조사 실시~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백오피스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이하「당사」)는 2022년 1월 1일에 시행된 전자장부보존법에 관한 조사※1 및 시행 직전인 2021년 12월에 나온 동법의 전자보존 의무화에 대한 2년간의 유예조치에 관한 조사※2를 각각 경리, 회계,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약 1,0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1 【조사 실시 개요】실시 용역업체 : 주식회사 저스트시스템(넷 리서치 서비스 'Fastask'에서 실시) / 조사기간 : 2021년 11월 22일~11월 25일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조사개요 :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관한 인지도 조사 / 조사대상 : 경리, 재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1,073명
※2 【조사 실시 개요】실시 용역업체 : 주식회사 저스트시스템(넷 리서치 서비스 'Fastask'에서 실시) / 조사기간 : 2021년 12월 28일~12월 29일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조사개요 :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유예조치'에 관한 인지도 조사 / 조사대상 : 경리, 재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1,100명

■ 조사 개요

- 시행 1개월 전 시점에 전자장부보존법 개정에 대해「내용까지 알고 있음」이 29.8%
- 시행 1개월 전 시점에 전자장부보존법 개정에「대응 완료」라 응답한 기업이 17.2%
- 시행 3일 전 시점에 전자보존 의무화에 2년간 유예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모름」이 38.5%
- 전자보존 의무화에 대해 2년간의 유예조치가 내려 52.3%의 사람들은「1년 안에 도입 희망」을 고려 중

■ 조사 배경

원격근무나 업무 프로세스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가 사회적으로 추진되면서 청구서나 영수증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2021년도 세제 개정에서의 전자장부보존법 개정으로 인해 '스캐너 보존의 요건 완화'와 '전자거래 데이터의 전자보존 의무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스캐너 보존의 요건 완화'에는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철폐나 타임스탬프 요건 완화 등이 있어, 경비 정산의 페이퍼리스화나 업무 효율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거래 데이터의 전자보존 의무화'는 메일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수령한 청구서나 영수증 등의 전자거래 데이터에 대해 이제까지 인정되던 출력 서면에 의한 보존조치가 폐지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데이터로 보존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의무화됩니다. 2021년 12월에 나온 [2022년도

세제 개정 대강령]에는 [전자거래정보에 관한 전자적 기록의 보존제도]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라는 형태로 유예 기간이 마련되었으나 모든 기업이 전자보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전자장부보존법과 그 유예조치에 대한 이해도 및 보급률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 각 결과

【개정 전자장부 보존법에 관한 인지도 조사】

Q1 당신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n=1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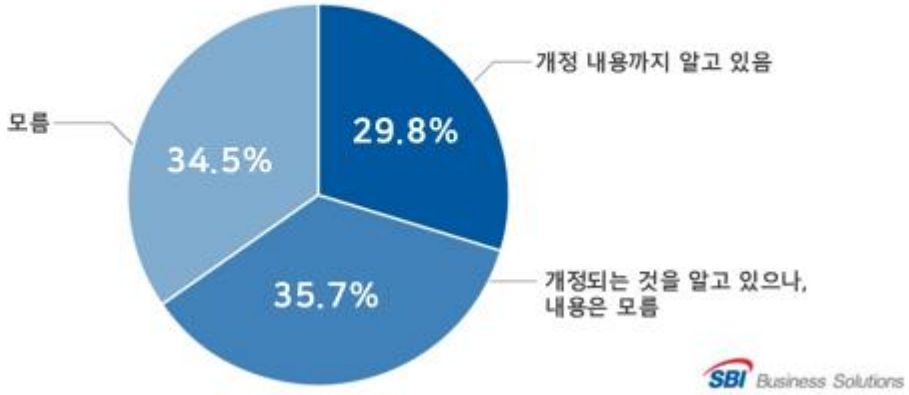

시행 1개월 전을 앞두고도 전자장부보존법 개정에 대해 「내용까지 알고 있음」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이해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하 Q1에서 '개정 내용까지 알고 있음'이라 답한 사람에 한한 질문)

Q2 당신은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서 전자보존 사전승인제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n=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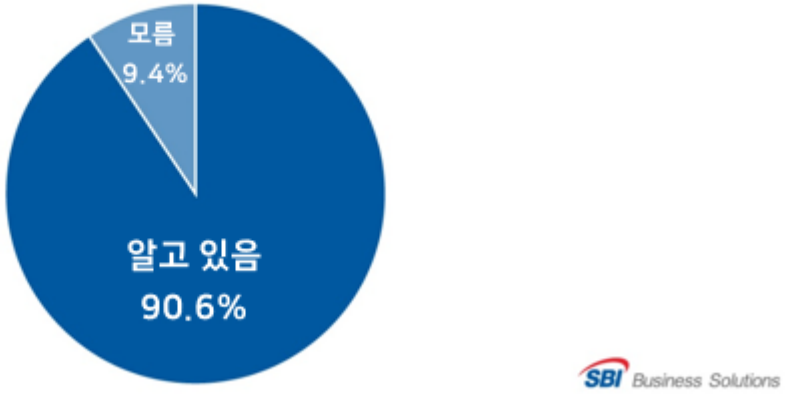

Q3 당신은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서 종이 서류의 스캔 보존 요건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n=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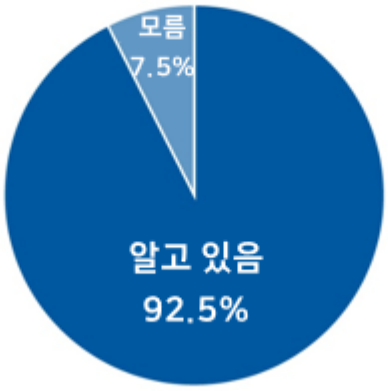

Q4 당신은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의 전자거래 데이터를 종이로 출력하여 보존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n=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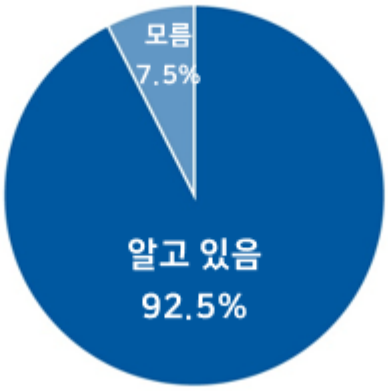

Q5 당신은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의 전자거래 데이터 보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색신고* 및 연결 납세 승인 취소처분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색신고 : 1년 기준 소득세를 납세하기 위한 신고납세제도 (n=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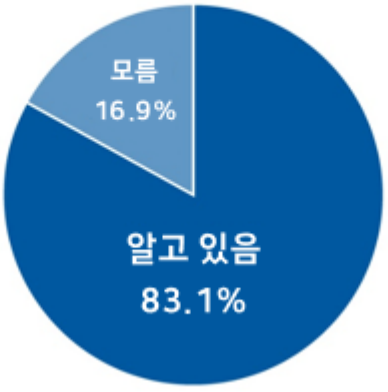

'개정 내용까지 알고 있음'이라 대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7~9%의 사람들은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전자거래 데이터의 전자보존 의무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의 리스크'에 관해서는 16.9%의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 Q1에서 '개정 내용까지 알고 있음' '개정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내용은 모름'이라 답한 사람에 대한 질문)

Q6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 또는 경영하는 회사는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n=703)

개정 1개월 전 시점에 전자장부보존법 개정에 「대응 완료」라 응답한 기업은 17.2% 밖에 되지 않으며, 30%의 사람이 「(법개정이 있는 것을 알지만)대응하지 않음/모름」이라 답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 30% 이상이 기존 법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기업이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대한 대응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정 전자장부보존법 「유예조치」에 관한 인지도 조사】

Q1 당신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유예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n=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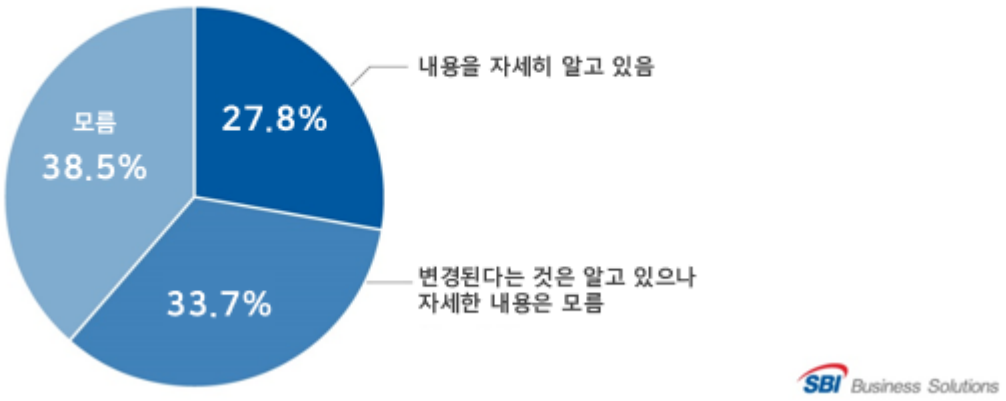

2021년 12월에 정부가 내세운 전자보존 의무화의 2년간 유예조치에 대해서 시행 3일 전인 12월 29일 시점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음」이라 대답한 사람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40% 가까이의 사람들은 유예조치가 나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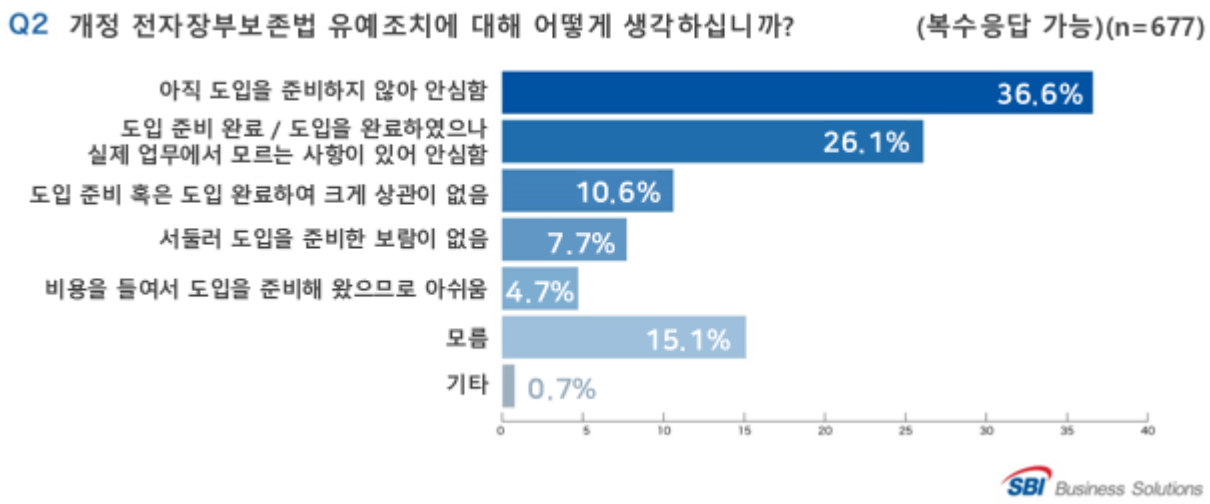

전자보존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 도입 준비 완료/도입 완료한 기업을 합해 「(유예조치에 대해) 안심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이나 준비를 진행한 기업에서도 운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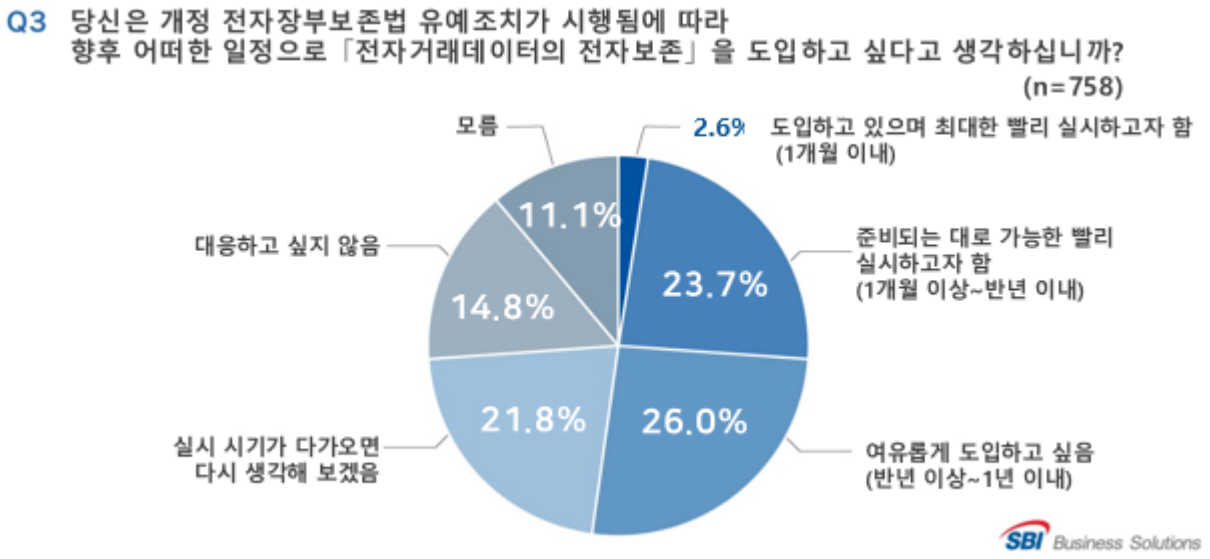

52.3%가 「1년 안에 전자보존을 도입하고 싶음」이라 응답하여 2년의 유예조치에도 과반수의 경우는 전자보존의 계획적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총론

이번 조사로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까지도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과 12월 발표된 전자보존 의무화에 대한 2년간의 유예조치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예조치가 나오면서 전자보존 도입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물론, 준비해 온 기업들도 실제 운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또한 과반수의 경우 2년간의 유예가 생겼음에도 1년 이내로 전자보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은 유예조치가 내려져도 언젠가는 모든 기업이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페이퍼리스화나 업무 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경리담당자와 경영자에게 이점이 있는 법 개정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가 세미나의 실시 등을 통하여 계획적인 전자보존 도입과 경리 업무의 DX추진을 서포트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진심으로 대응하여 백오피스 차원에서 경영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력이나 자금과 같은 리소스가 부족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갈 것입니다.

■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경비Bank II」개요

「경비Bank II」는 웹브라우저 기반 클라우드 경비정산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언제 어디서든 신청·승인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지불의뢰와 지불예정표에 의한 지불관리, 경비집계에 의한 경비분석, 계좌이체 데이터 및 회계 분개데이터 작성 기능을 탑재하여 경리업무 효율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서 커스터마이즈나 유연한 승인 워크플로우 설정 등으로 기업 형태별 경비정산 업무 시스템화를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물론 천명 이상의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에 대응할 청구서와 영수증 데이터 저장을 추가비용 없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비Bank II」상세에 대해서는 서비스사이트 (http://kb2.sbi-bs.co.jp)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비Bank II」운용 이미지>

■ 당사 개요

회사명	: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설립	:	1989년 9월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자본금	:	3억 5천만엔 (자본준비금 등 포함)
사업내용	: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
URL	:	https: //www.sbi-bs.co.jp/

이상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